

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가) 1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좌측에 설치할 것

나) 2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

2) 높이 방향

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,000밀리미터 이하일 것. 다만, 다른 등화와 결합된 경우에는 1,200밀리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
나. 뒷면안개등과 제동등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를 이상일 것

다. 관측각도

1)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,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2)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라. 조사 방향

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

마. 작동조건

1) 뒷면안개등은 동시에 점·소등되는 구조일 것

2) 주행빔 전조등, 변환빔 전조등,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 안개등이 점등되는 구조일 것

3) 뒷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소등될 수 있을 것

4) 뒷면안개등은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소등될 것

가) 앞면안개등이 소등된 경우

나) 시동장치의 열쇠에 의해 자동차가 정지된 경우

5) 뒷면안개등이 소등된 상태에서 수동조작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은 자동 또는 독립적으로 점등될 것

바. 표시장치

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황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

2.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